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25호 2021. 10. 6.(수)

거창 행복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3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 2
제2021-142호 도로명주소 고시 ····· 6

공 고

제2021-1386호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8
제2021-14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9
제2021-1401호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10
제2021-1410호 거창군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11
제2021-1426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1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4호 2021년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34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13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의 2,「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거창군수

1. 목 적

○ 노인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지정고시 내용

○ 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시 설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지정구간	연 장
월포경로당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70	가조면 수월리 1370-37 ~ 수월리 1370-36	L=480m
정장경로당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거창읍 대평리 1421-5~정장리 940-1	L=300m
대현경로당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25-2	남상면 대산리 1479 ~ 대산리 271-2	L=300m
괴화경로당	경남 거창군 남상면 괴화길 6	남상면 대산리 1264-7 ~ 대산리 1296-2	L=290m
월성경로당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433-4	북상면 월성리 1548 ~ 월성리 1099-4	L=260m

○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 설 명	소 재 지	보호구역 지정구간	연 장
고제경로당	경남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70	고제면 농산리 196-3 ~ 농산리 187-2	L=330m

※ 붙임 : 보호구역범위 참조

3.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

【 붙임 1 】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가조면 수월리 1370-37 ~ 수월리 1370-36(L=480m)

거창읍 대평리 1421-5 ~ 정장리 940-1(L=3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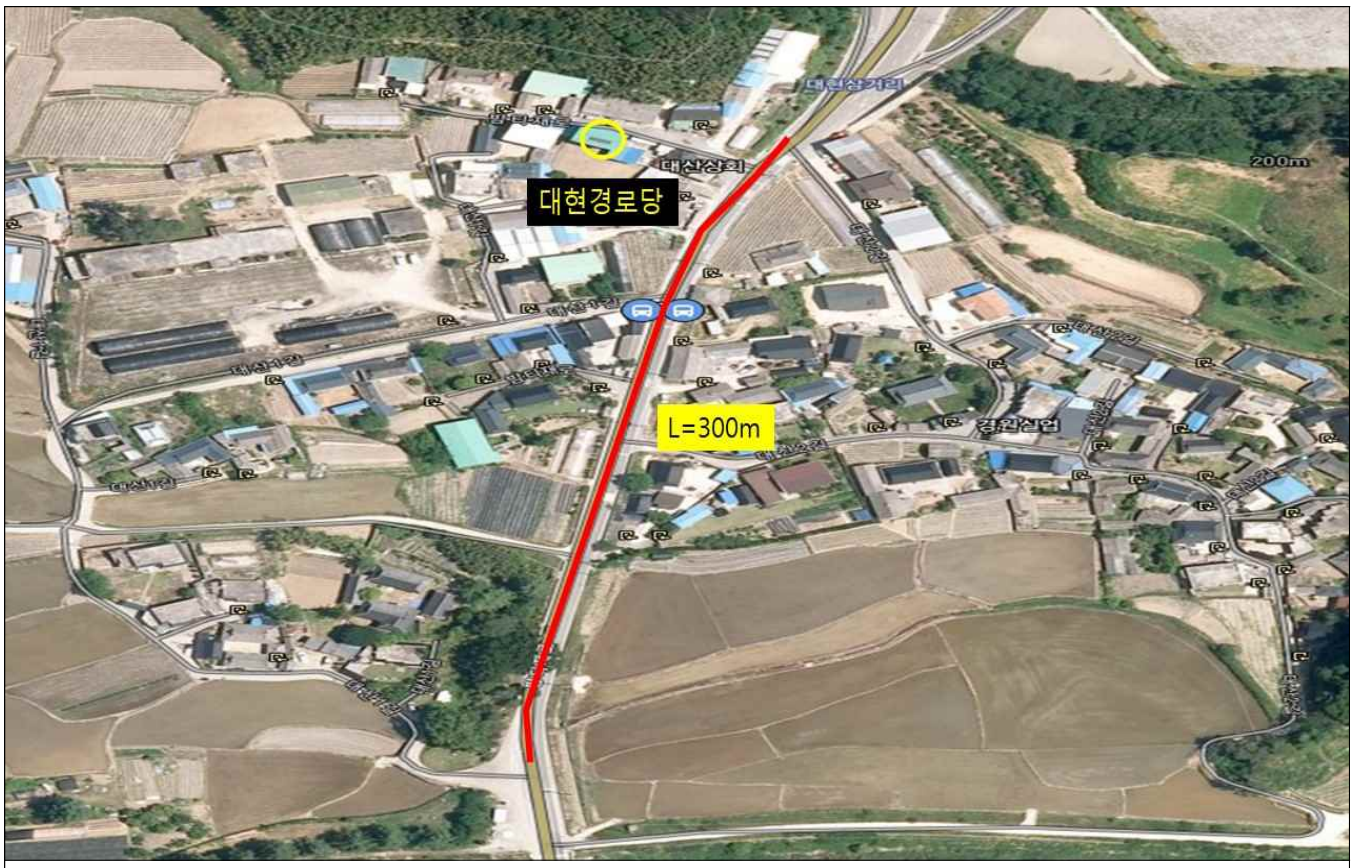

남상면 대산리 1479 ~ 대산리 271-2(L=300m)

남상면 대산리 1264-7 ~ 대산리 1296-2(L=290m)

북상면 월성리 1548 ~ 월성리 1099-4(L=260m)

고제면 농산리 196-3 ~ 농산리 187-2(L=330m)

거창군 고시 제2021 - 14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6.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1길 24 등 6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65-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1길 24	20211006	20090401	동변길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58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매바우길 20-52	20211006	20090401	매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매바우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27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상구송길 102-48	20211006	20090401	300여년 전 삼척 진씨가 열었다고 하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39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975-50	20211006	20090401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20211006	20090401	의상봉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변경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2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123	20211006	20090401	행정구역명 장팔리가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1길 60-37	20211006	20090401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1386호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거 창 군 수

1. 결정 · 공시

○ 공 시 일 : 2021. 9. 30.

○ 공시내용

- 2021. 6. 1. 기준 개별주택 공시대상 247호
-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재지·면적·가격

○ 열람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거창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1. 9. 30. ~ 10. 29.

○ 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신청내용 : 2021. 6. 1.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의 인근주택과의 가격불균형 등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

○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처 : 거창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문 의 처

○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2)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 공고 제2021-14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30.

거 창 군 수

1.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21.09.30.~ 2021.10.15.(15일간)

3.공시송달대상

차량번호	구분	성명	주소	판결선고일	판결확정일
경남99바7043	양도인	유한회사 대*운*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	2021. 3. 30.	2021. 6. 1.
	양수인	김*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4.공시송달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알리오니 양수인께서는 2021년 10월 15일까지 이전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따라 강제 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1401호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05-2번지 일원에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30일

거 창 군 수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주)성보산업 토석채취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05-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37,561㎡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시 행 자 : (주)성보산업

나. 공개방법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자료)

○ 공개기간 : 2021년 9월 30일 ~ 2021년 10월 18일(18일)

○ 공개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주민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내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2)으로 거창군청 산림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 055-940-3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21-1410호

거창군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속도하향 정책인 `거창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5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목적 : 도로 최고제한속도 조정(하향)
나. 사 업 명 : 2021년 거창군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
다. 사업규모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정비
라. 범　　위 : 제한속도 승인내역 참조
마. 주관부서 : 거창군 경제교통과 교통담당(☎055-940-3382)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년 10월 5일 ~ 2021년 10월 26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가조면 표지판 위치도

가조면 노면표시 위치도

웅양면 표지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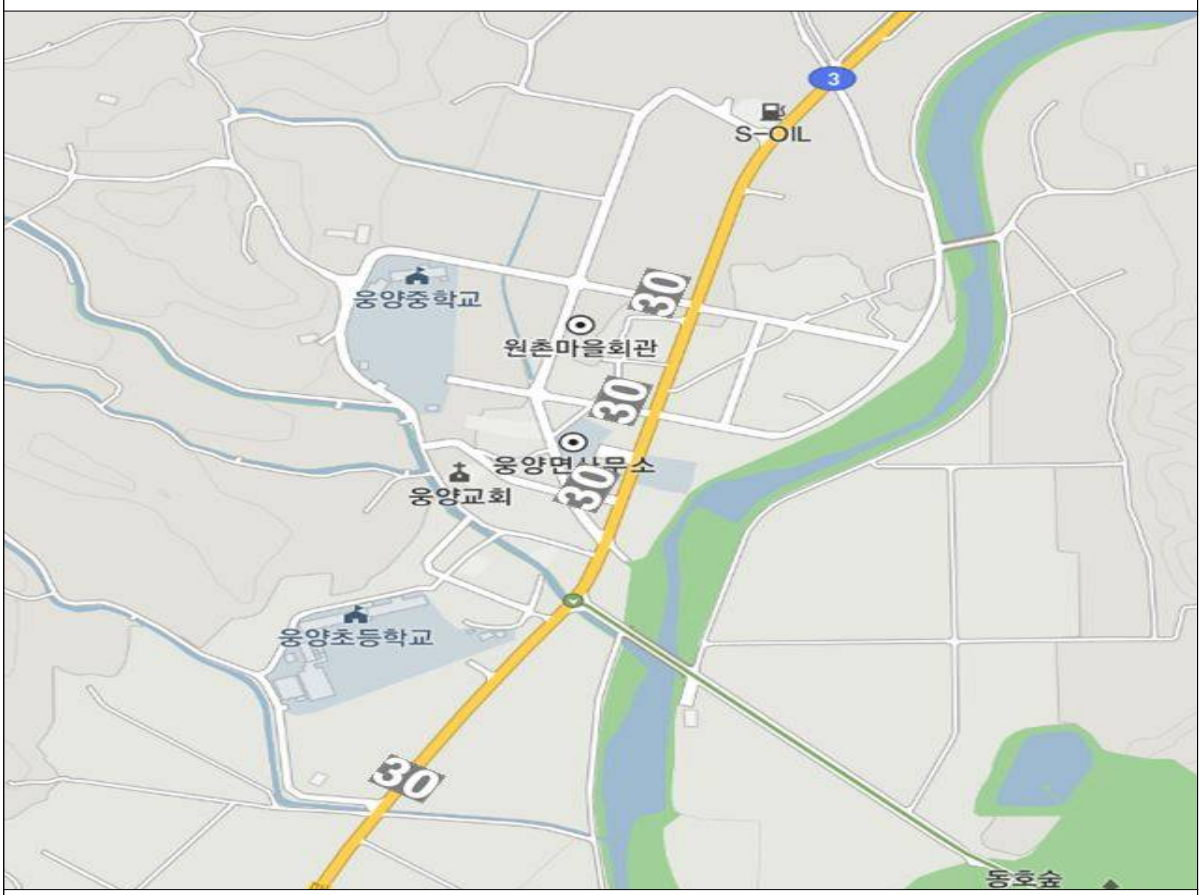

웅양면 노면표시 위치도

거창읍 공업지역 표지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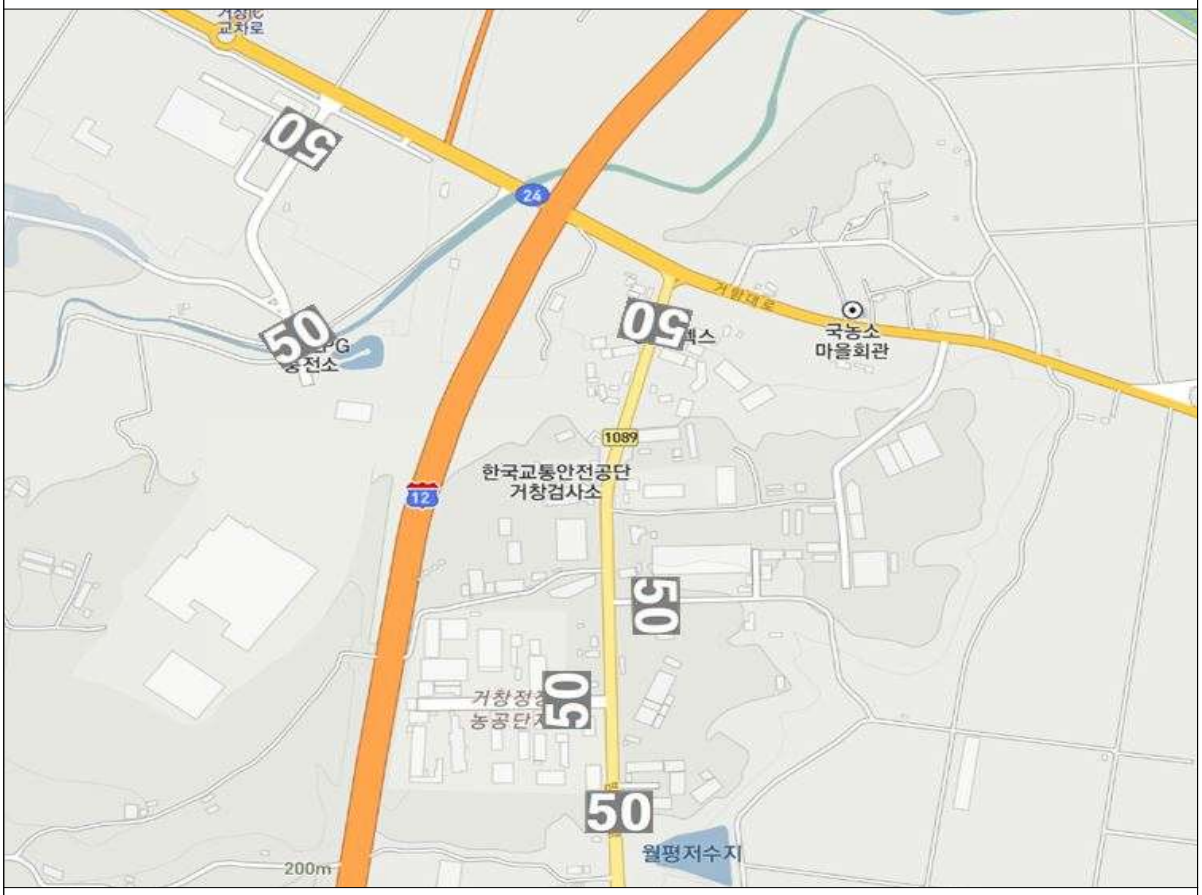

거창읍 공업지역 노면표시 위치도

남상면 공업지역 표지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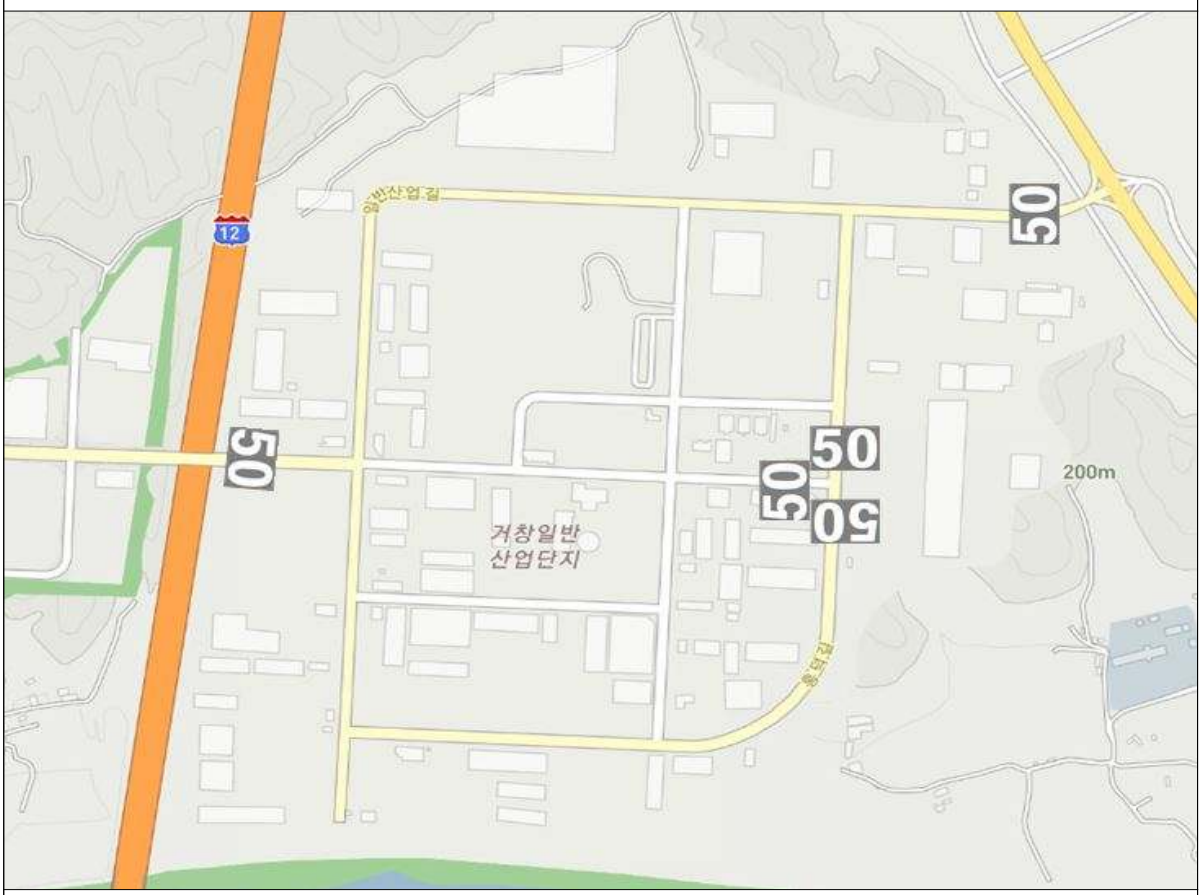

남상면 공업지역 노면표시 위치도

▶ **교통안전 표지판**

	장소	설치 시설	수량	
1	가조면 마상리 243-4	통합표지판(30)	1	가조면
2	가조면 수월리 460-4	통합표지판(30)	1	
3	가조면 마상리 91-9	통합표지판(50)	1	
4	가조면 수월리 716-1(수목가든 앞)	통합표지판(50)	1	
5	가조2교 서단(수월리 1370-34)	발광형 표지판(50)	2(양방향)	
6	가조면 마상리 238	발광형 표지판(50)	2(양방향)	
7	가조초등학교 앞	발광형 표지판(30)	2(양방향)	
8	마상사거리	발광형 표지판(30)	8(각방향)	
9	가조2교 서단(면소재지 방면)	발광형 표지판(30)	1	
10	가조면 마상리 163-1	발광형 표지판(30)	1	
11	가조면 마상리 769-1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2	가조면 마상리 39-8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3	가조면 마상리 37-4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4	가조면 마상리 155-17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5	가조면 마상리 17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6	가조면 마상리 860-7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7	가조면 수월리 446-7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18	웅양면 곰내미다목적회관 앞	통합표지판(30)	1	웅양면
19	웅양면 노현리 97	통합표지판(30)	1	
20	웅양면 북부농협 앞	발광형 표지판(30)	4(각방향)	
21	웅양면 노현리 202-1	발광형 표지판(30)	2(각방향)	
22	웅양면 노현리 263-8	발광형 표지판(30)	3(양방향)	
23	웅양면 노현리 115-1	3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24	웅양면 노현리 257-1	30속도 표지판(정주식)	2(양방향)	
25	웅양면 노현리 111	30속도 표지판(정주식)	4(양방향)	
26	거창읍 대평리 1346-16	통합표지판(50)	1	거창읍 공업지역
27	거창읍 정장리 406-4	통합표지판(50)	1	
28	거창읍 밤티재로 1327	통합표지판(50)	1	
29	거창읍 정장리 117-2	통합표지판(50)	1	
30	거창읍 정장리 88-3	발광형 표지판(50)	3(각방향)	
31	거창읍 대평리 1342-6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32	거창읍 밤티재로 1303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33	남상면 대산리 1609-1	통합표지판(50)	1	남상면 공업지역
34	남상면 대산리 1545	통합표지판(50)	1	
35	남상면 홍덕길 11	발광형 표지판(50)	3(각방향)	
36	남상면 일반산업길 207	발광형 표지판(50)	4(각방향)	
37	남상면 홍덕길 133	발광형 표지판(50)	3(각방향)	
38	남상면 대산리 1567-10	발광형 표지판(50)	3(각방향)	
39	남상면 대산리 1542	50속도 표지판(내민식)	3(각방향)	
40	남상면 대산리 1569	50속도 표지판(내민식)	3(각방향)	
41	남상면 대산리 1591	50속도 표지판(내민식)	3(각방향)	
42	남상면 대산리 1557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43	남상면 대산리 1589	50속도 표지판(내민식)	2(양방향)	

▶ **교통안전 노면표시**

	장소	설치 시설	수량 및 방향	
1	가조면 마상5길 131-3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가조면
2	가조면 마상리 237-18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3	가조면 마상리 152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4	가조면 마상리 188-1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5	가조면 마상리 860-10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6	가조면 마상리 860-2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7	가조면 수월리 449-3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8	가조면 수월리 462-6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가조복지회관 방면)	
9	웅양면 노현리 269	속도제한 노면표시(30)	1(웅양파출소 방면)	웅양면
10	웅양면 노현리 216-4	속도제한 노면표시(30)	2(양방향)	
11	웅양면 노현리 222-3	속도제한 노면표시(30)	2(양방향)	
12	웅양면 노현리 145-3	속도제한 노면표시(30)	2(양방향)	
13	거창읍 대평리 1339-2	속도제한 노면표시(50)	1(SK-LPG충전소 방면)	거창읍 공업지역
14	거창읍 정장리 406-4	속도제한 노면표시(50)	1(거창푸드종합센터 방면)	
15	거창읍 밤티재로 1327	속도제한 노면표시(50)	2(월평마을 방면)	
16	거창읍 정장리 117-2	속도제한 노면표시(50)	2(국농소 삼거리 방면)	
17	거창읍 정장리 95-2	속도제한 노면표시(50)	2(양방향)	
18	거창읍 정장리 83-4	속도제한 노면표시(50)	2(양방향)	
19	남상면 대산리 1545	속도제한 노면표시(50)	2(하늘바이오 방면)	남상면 공업지역
20	남상면 대산리 1609-1	속도제한 노면표시(50)	2(승강기 안전공단 방면)	
21	남상면 대산리 1567-10	속도제한 노면표시(50)	12(각방향)	

거창군 안전속도 5030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2021년 거창군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2021년 거창군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4

2021년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5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전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2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예정일)

분 야	자 격 요 건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필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경력)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공공기관 및 병원, 노인시설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 센터운영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 치매환자 선별 및 진단 검사 수행 ○ 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 치매예방 관리 사업 ○ 상담등록관리

3.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1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35시간

5. 보수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비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1,181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1. 10. 12. ~ 10. 14.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1.10.15.(금)	2021.10.20.(수) 거창군청	2021.10.22.(금)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6)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제출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마급 5,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필요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임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람

13.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중국 등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등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거창군 행정과(055-940-3176)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 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 진 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 염 병 의 심 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4. 시행)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지자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 명
임용부서	거창군 보건소	(담당자 기재)		
분야	치매안심센터운영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서식1]	
2	이력서 ▹[서식2]	
3	자기소개서 ▹[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서식4]	
5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자격검증 동의서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6]	
9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1년도 거창군 제4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치매안심센터운영)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印

응 시 표 (2021년도 거창군 제4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치매안심센터)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시간선택제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는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 책임입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기재	응시 분야	치매안심센터 운영	성 명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치매안심센터운영	임용 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성명	
				2021. . . 작 성 자 :	(인)

[서식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임용 분야	치매안심센터운영	임용 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성 명	
2021. . . 작 성 자 : (인)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포함)

성　　명		임용분야	치매안심센터 운영
생년월일	.　.　.		

본인은 거창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동 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전형 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1-1426호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거창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사업범위 및 비용분담(안 제4조)

라. 협력관계 구축(안 제5조)

마. 재정지원(안 제6조)

4. 예고기간 : 2021. 10. 6.(수) ~ 10. 26.(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0. 26.(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1)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인구교육과)

2) 전화 055-940-8813, 팩스 055-940-8905, 이메일 ay1357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 【☎(055)940-88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